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

(전홍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0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4.

발의의원 : 전홍배 의원 등 12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0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·운영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2조~제3조)
- 나.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·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라. 위원·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비밀 엄수 사항 규정(안 제7조)

3. 제정 규칙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·제65조·제66조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01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0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,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변호사·교수
2. 전직 지방의회의원·공무원
3.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
2.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 라 한다)의 자문

3.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

4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 회의운영 등) ① 위원회는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,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 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를

거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엄수 의무)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준용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그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의회규칙 제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되고 위촉된 것으로 보되, 그 위원에 대해서도 이 규칙 제4조를 적용한다.

제3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의 선출 및 그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의회규칙 제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, 그 임기는 각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3.3.21. 일부개정, 2023.9.22. 시행)

제43조(겸직 등 금지)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1.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
2.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

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(의회규칙)」(2022.2.28. 일부개정시행, 개정 전)

제83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